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10. 25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7년 10월 15일

. 회부일자 : 1997년 10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142회 임시회

. 제4차 내무위원회(1997. 10. 25)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소방본부장 이용태)

가. 제안이유

-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및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규정 위반행위에 과태료 20만원을 신설하며 전기사업법령등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발전설비, 변전설비등 16개 조문을 폐지하는 동시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판매시설의 매장등에 “금연구역”을 표시함에 있어 표시기준을 국민 건강증진법령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제2항)
-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및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5조, 18조, 19조)
-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등 규정 위반에 과태료 20만원 이하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안 제12조)
- 전기사업법등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발전설비, 변전설비등 16개 조문을 폐지 함.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 건 영)

충청북도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화재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문은 폐지하였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은 정비하였으며 일부 벌칙규정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벌칙규정에 있어서 제5조(난로) 및 제18조(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제19조(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기준)를 위반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한 것과 제12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사항과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